

## <맹견소유자 교육 의무사항>

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개정.시행('19년3월21일)에 따라 맹견\*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(3시간)을 받아야 합니다.

- \* 맹견의 범위 : 1.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.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
3.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.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
5.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

또한, '19년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자는 '19.9.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참고로, 교육 미 이수시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맹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, <https://apms.epis.or.kr> (PC만 가능)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.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지자체 또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- \* 지자체(051-309-4651), 시스템문의-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(044-861-8852)

2019. 8.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